

고원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도시 태백

생신등록번호	교육과-2122
등 록 일	2026. 2. 23.
결 재 일	2026. 2. 23.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교육협력팀장	교육과장	경제국장	부시장
이서영	유소은	곽혜경	김신동	김동균
협 조 자	전결 2026. 2. 23.			

2026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계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둘째 자녀부터)
※ 단,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지원
- (2026년 예상인원) 1,608명
- (지원내용) 학교급식비(연 4회),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및 현장체험학습비(연 2회)
- (예 산 액) 금160백만 원(금일억육천만원)

□ 행정사항

-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학교): 2026. 3. 20. 한
- 지원신청서 접수 협조(동 행정복지센터): 2026. 4. 1.~4. 30.

태 백 시

2026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계획

- ◇ 다자녀 가정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 ◇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구현 및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

I 지원개요

- (추진근거)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2026년 지원 대상 확대

구분	2025년(기준)	2026년(확대)
지원 대상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둘째 자녀부터) ※ 단,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
지원 인원 (예상)	485명 초 183명 / 중 139명 / 고 163명	1,608명 초 652명 / 중 464명 / 고 492명

「태백시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 (지원기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내용) 학교급식비(연 4회),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연 2회), 현장체험 학습비(연 2회 / 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한도)
- (지원방법) 학교별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계좌 지급
- (예 산 액) 금160백만 원(금일억육천만원)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26백만 원 / 학교급식비 54백만 원 / 현장체험학습비 80백만 원

II 세부추진 계획

1.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및 시정소식지 등 홍보: 2026. 3. 20. 한
-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 요청(각급학교): 2026. 3. 20. 한

2. 지원절차

지원신청	① 신청자: 다자녀 가정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②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③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작성 ④ 통장사본,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자
↓		
접수 및 취합 후 제출	① 신청 대상자 요건 확인 (다자녀 가정 여부, 거주 기간 확인) ② 신청서 취합 후 제출 (동→교육과)	동 → 교육과
↓		
거주 여부 및 본인부담금 확인	① 지급기한일 기준 대상자 거주여부 확인(교육과→동) ②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본인부담금 확인(교육과→학교)	교육과 → 동, 학교
↓		
교육비 지원	① 신청인 계좌로 입금	교육과

- 지원신청서 접수(8개 동): 2026. 4. 1. ~ 4. 30.
- 지원신청서 취합 제출(8개 동 → 교육과): 2026. 5. 8.까지
-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교육과 → 해당 학교)
 - 학교급식비: 분기별 요청(6월, 9월, 12월, 익년 3월)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및 현장체험학습비: 연 2회 요청(9월, 익년 3월)

3. 교육비 지급기한

구 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 현장체험학습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 익년 2월말)	상반기 (3.1~8.31)	하반기 (9.1~ 익년 2월말)
지급기한	6. 15.	9. 15.	12. 15.	3. 15.	9. 15.	3. 15.

4. 제출서류

구 분	신청(구비)서류	비 고
공통 제출서류	①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5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③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해당 시 제출서류	④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관계 소명 서류 1부	해당자만 제출

5. 기타사항

- 기신청자는 학교 변동사항 없으면 별도 신청 불요
 - ※ 기신청자라도 학교가 달라지는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예)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신입생
- 학기 중 전입자는 관내 거주 6개월 이상 된 때 신청 가능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Ⅲ

행정사항

- 지원 계획 송부(8개 동,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2026. 3. 6. 한
- (기획감사과) 보도자료 배포 및 시정소식지 게재 협조
- (각급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 2026. 3. 20. 한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접수 협조: 2026. 4. 1.(화)~4. 30.(수)
 - 신청서 취합 제출: 2026. 5. 9.(금) 한

- 붙임 1. 교육비 지원신청서 1부.
2. 가정통신문(안) 1부.
3.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Q&A 1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지원 학생 정보	자녀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		학년	비고	
								자녀 구분에는 몇 번째 자녀인지 기재 *예시: 첫째, 둘째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으로 발급)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3.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그 입증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자 확인 및 관리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금융계좌정보 자녀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 학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지원대상 확인]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구 분	신청인	재학 중인 자녀(성명)					
	20 . . .	성 명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결 재	담당자			담 당			동 장		

붙임 2

가정통신문(안)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문

우리 시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내용

- 신청기간: 2026. 4. 1.(수) ~ 4. 30.(목)
- 지원대상: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둘째 자녀부터)
※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
- 지원내용: 학교급식비(연 4회),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연 2회, 재료비 포함), 현장체험학습비(연 2회: 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한도)
- 지원금액: 지원내용 중 수익자가 부담한 금액
- 지원기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절차: 시 → 수익자 부담액 확인(학교) → 시 →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 분	신청(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①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과거 주소변동(5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③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해 당 시 필요서류	④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관계 소명 서류 1부	해당자만 제출

■ 유의사항

- 전년도(2025년)에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 불필요
※ 단,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학교가 바뀌는 경우 해당 학생은 신규 신청 필요(초6 → 중1, 중3 → 고1)

■ 문의: 태백시청 교육과 교육협력팀 ☎ 033-550-3062

태 백 시 장

붙임 3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Q & A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Q & A

Q : 두 자녀 가정으로 첫째는 성인, 둘째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네, 둘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세 자녀 가정으로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중학교 2학년, 셋째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네, 세 자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2026년 6월에 셋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네, 학기 중에 다자녀 가정이 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을 매년 해야 하나요?

A : 아니요, 작년에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등 학교가 바뀌는 경우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6 → 중1, 중3 → 고1)

Q : 다자녀 가정 교육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네, 소득과 관계없이 거주 기준과 다자녀 가정기준 만족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재혼가정으로 두 자녀(초, 중 재학)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네, 둘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자녀가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두 자녀 가정으로 2026년 2월에 다른 지역에서 태백시로 전입했습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9월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